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96
----------	------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8. 6. 1.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 6. 11.
3. 상정일자 :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본부장)

1. 제안이유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중 50플러스캠퍼스에 해당하는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새로 개관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립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플러스캠퍼스 중 새로 개관한 남부캠퍼스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안 제6조의2, 별표1 개정)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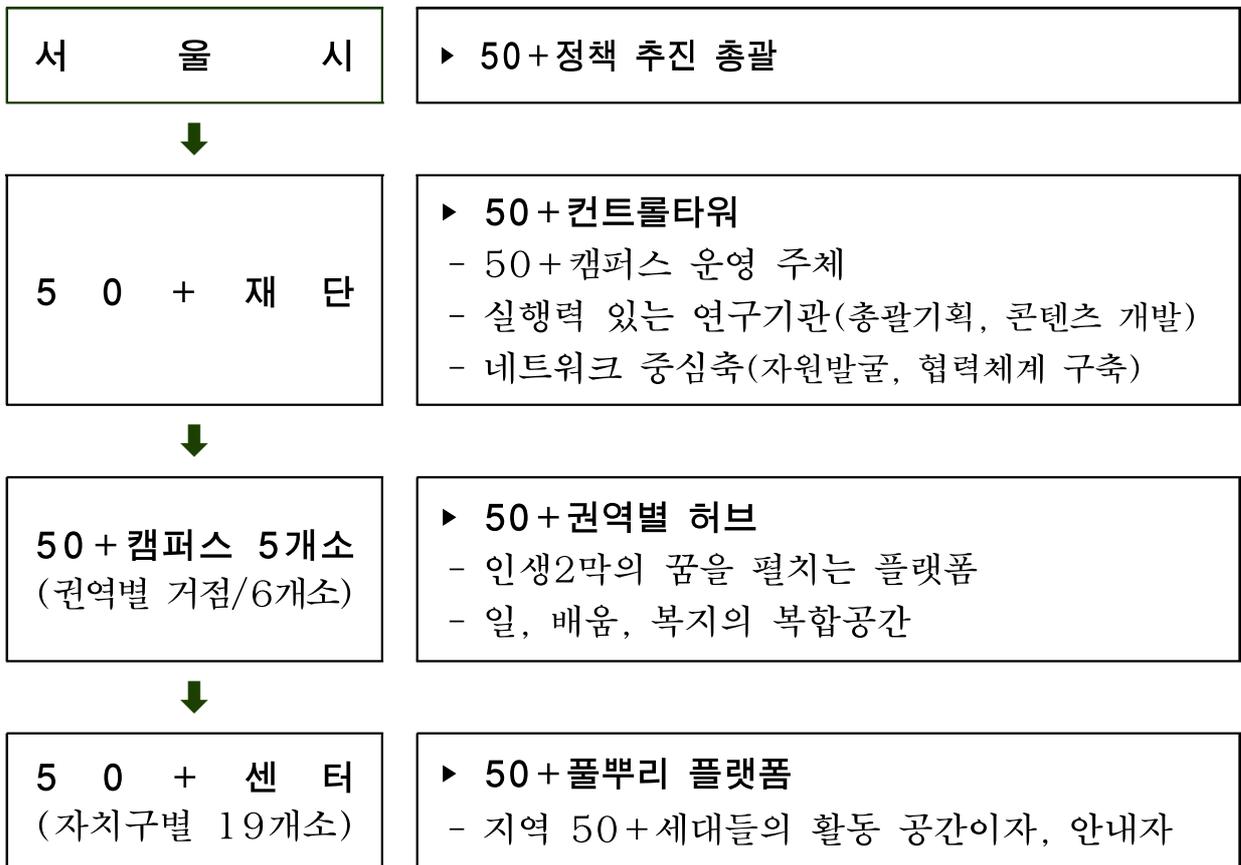
- 입법예고 (2018. 3.15. ~ 4. 4.) 결과 : 제출의견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조기은퇴, 역할상실, 노후불안 등으로 예비복지수요자로 평가되는 중장년층 세대의 지원 및 역량 활용을 위하여, 교육·일자리·자원봉사 등을 확대하고 자립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2014.4.22.)’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50플러스 재단과 캠퍼스 및 50플러스 센터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있음

<그림> 기관별 역할(기능)



- 같은 방침에 따라 서부캠퍼스(은평구), 중부캠퍼스(마포구), 남부캠퍼스(구로구) 및 도시권50플러스센터(종로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 남부캠퍼스(구로구)에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임.(안 제6조의2, 별표1 개정)

<표>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2 50플러스세대(중장년층) 지원 필요성

- 50플러스 세대인 서울시 장년층(50~64세)은 217만명(전체 인구의 21.7%)으로서 14세 이하 아동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합한 규모와 같은 대규모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장년층은 예비노인으로서 잠재적 복지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보장과 노후준비, 가족관계, 건강 및 문화 등에서 높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음.

- 기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와 비교할 때, 차별화된 특성¹⁾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장년층의 특성과 욕구가 앞으로 미래 서울의 의료, 복지, 경제 등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인식할 때 이들을 위한 특색 있는 복지사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수행기관(50플러스 캠퍼스 등)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시 서남권 지역의 50플러스 지원업무를 맡을 수 있는 남부캠퍼스를 설치·운영하여 장년층을 위한 복지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일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닌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생재설계, 여가·문화활동 등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3 결론

- 장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한정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 등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다른 세대 간의 갈등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앞으로 50플러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사업수행기관(50플러스 캠퍼스 등)은 장년층이 다른 세대(청년 및 노인세대)와 교류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도, 다른 한편 취약계층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35%, 소득 수준 중상위 계층 이상 68.6%로서 산업 역군이자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주역으로 평가됨.

- 또한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관한 조례안 제출권은 시장에게 귀속하고 있으므로, 조직법정주의를 감안하여 조직 개편 사항을 사전 또는 신속하게 조례상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 바, 입법상의 지연 또는 실기(失期)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6
----------	------

제출년월일 : 2018년 6월 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중 50플러스캠퍼스에 해당하는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새로 개관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립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플러스캠퍼스 중 새로 개관한 남부 캠퍼스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안 제6조의2, 별표1 개정)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설명	명칭	소재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포로 26길 2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별표 개정)

(1) 입법예고(2018. 3. 15. ~ 4. 4.)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의 요인 및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류미경(☎ 2133-7798)